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89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홍철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4.
3. 회부연월일 : 2025. 10.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 수출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에도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8위 방산 수출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며, 우리 군을 “첨단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무기체계 총수명주기(Life-Cycle) 비용의 약 70%가 운영·정비(O&S)에 소요된다는 미 회계감사원(GAO) 분석처럼, 우리 국방예산도 약 60조 원 중 70% 이상이 전력운영비로 편성되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신규 전력 투자가 쉽지 않음. 또한 무기체계 정비(MRO)가 해외에 치중되어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실제 우리 군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군용기 해외 정비 비용만 2조 5천억 원에 달하고, 8조 6천억 원 규모의 F-15K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장비·서비스 패키지 대부분을 미국업체가 수행하고 있음.

해상 분야는 국내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를 잇따라 수주할 정도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우리 해군 정비 물량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민간 이전이 지체되고 있음.

육군의 경우에도 오랜 숙원사업이던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가 최근 발표된 만큼, 향후 후속 군수지원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안정적인 정비 및 부품수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계속된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우리 군은 현 50만 명 규모의 상비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전투 임무 집중을 위해 비전투병력을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특히 각 군은 무기체계 정비업무를 위해 수많은 현역 정비인력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군 인력 구조 개혁과 연계해 민간에 이양·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전투병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육·해·공 모든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첫째, 국방예산 구조를 ‘고비용 구조’에서 ‘효율적 민·군 분담’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셋째,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무기체계의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군 정비물량”이라 함은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수리, 개조 등 정비작업의 대상 또는 그 총량을 말한다.
<u><신설></u>	8. “무기체계 정비산업”이라 함은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수행되는 유지관리, 수리, 분해점검, 개조 등 정비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품·기술 공급, 인력 양성, 시설 운영 및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u><신설></u>	제24조의2(군 정비물량의 단계적 민간 이양·위탁 등) ①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한다.

②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수준을 정할 때에는 국내 민간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기술·인력·시설 등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재교육, 민·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 정비물량의 민간 이양·위탁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과 정비사업자(무기체계 정비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무기체계 총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 중 운영·정비(Operating & Support)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미국 무기체계의 경우 총수명주기비용의 약 70%가 운영·정비 단계에서 발생함¹⁾.

1) 2024.2.29. 미국 회계감사원(GAO), GAO-24-107378.

- 우리나라 역시 군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 정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무기체계 운용·정비 비용 절감은 방위력개선폰비 재원 확보 및 국방재정 구조의 중장기적 개선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 것으로 보임.

[군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 정비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4,695	37,367	35,289	38,654	40,108	43,324

자료: 국방부

- 항공 분야의 경우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정비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²⁾, 해상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수주³⁾할 정도로 검증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군 정비 물량의 민간 이전은 제도적·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⁴⁾.
- 또한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유지에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⁵⁾, 전투 임무 중심의 병력 구조 개편과 함께 정비·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민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점

2) 국방부에 의하면, 군용기의 경우 2020~2024년의 경우 총비용 5조 6,792억원 중 해외정비 비용은 총 2조 5,197억원에 달하며 이는 총 정비비의 44.4%에 해당함.

3) 2024년 7월 (주)한화오션이, 2025년 12월 (주)HJ중공업이 각각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하고, 한화오션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의 MRO 사업을, HJ중공업은 'USNS 어밀리아 에어하트'호의 MRO 사업을 수행함.

4) 국토교통부 지정 MRO 전문업체로 민간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회사)가 지정되어 있으나, 국방 분야에서는 아직 MRO 전문업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음.

5)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4,322명이었으나 2026년 233,182명으로 감소하였고, 2040년에는 157,9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KOSIS 인구통계포털)

차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하고,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 및 민·군 기술협력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역량을 갖춘 민간 업체의 참여를 통해 군은 전투준비 등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은 정비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정비 물량 수주 확대 등 국내 방산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외국군의 경우 군 정비지원체계를 민간으로 이양·위탁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영국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군 정비창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캐나다·일본은 정비창 규모의 정비조직을 군 내부에 운영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정비를 수행함으로써 경쟁원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⁶⁾.

□ 셋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출생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정비 분야의 단계적 민간 이양·위탁은 병역자원

6) 미래전 대비 효율적인 정비창 아웃소싱 방안 연구, 장상국,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6권 제2호, 2019.

감소에 따른 군 구조 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⁷⁾.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로써, 군 정비 분야의 민간 이양·위탁과 같이 특정 기능 영역에 특화된 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동 법률의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및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⁸⁾ 등에서 정비분야의 민간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의 내용을 「군수품관리법」등 군수 관련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국방백서 2022」 129p. 국방부.

병력자원 부족을 극복하고, 민간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고...(이하 생략)

8)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군수품의 정비 등)

④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주요 군수품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관련 업체 등에 군수품의 정비 등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4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계약상대방 선정기준) PBC를 위한 계약상대방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적용대상 군수품의 부분품, 결함체, 구성품 및 완성 장비를 제조한(기술 협력 생산 포함) 업체
2. 제1호의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및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체를 포함하는 연합체나 공공기관

□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간 외주정비 확대가 국방비 지출 효율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음⁹⁾. 이에 따라 개정안이 의도한 정책 효과와는 상반되게 외주정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 내용 중 군 정비부대 인력의 재취업·재교육 및 민·군 기술교류·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¹⁰⁾은 기존 현행법에서 「국방전직교육원법」에 따른 전직지원¹¹⁾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상의 기술협

9) 국방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 정비물량을 외주정비할 경우 국방부에서 직접 정비(이하 “군직정비”라 칭함)에 비해 1.08배에서 1.99배까지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정안에 따라 외주정비를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보고서)

[군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 정비의 외주정비 시 비용 증가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K1전차	K55자주포	K200장갑차	UH-1H헬기	UH-60헬기	F-4E 기체	K-F16엔진
군직정비	8.66	2.82	1.68	4.85	8.04	14.94	25.13
외주정비	14.89	5.38	2.22	5.22	12.78	18.11	31.63
비율 (외주 / 군직)	1.72	1.91	1.32	1.08	1.59	1.21	1.26

주: 한국생산성본부(2011) 연구용역보고서, 「군 정비창 생산성 평가 연구보고서」

자료: 국방부

[군 무기체계 및 관련 장비 정비의 외주정비 시 비용 증가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K1전차			K55자주포			K200장갑차		
	2009	2015	2019	2009	2015	2019	2009	2015	2019
군직정비	8.66	10.57	11.10	2.82	4.12	4.59	1.68	1.33	1.40
외주정비	14.89	17.86	20.39	5.38	6.50	7.35	2.22	1.71	2.78
비율 (외주 / 군직)	1.72	1.66	1.84	1.91	1.58	1.60	1.32	1.29	1.99

주: 한국국방연구원(2019) 연구용역보고서, 「군직·외주정비 적정 배분기준에 관한 연구」

자료: 국방부

10) 안 제24조의2 ③ 국방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군 정비부대 인력의 민간 재취업·재교육, 민·군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1) 「국방전직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

력 제도¹²⁾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본 법이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취지의 법으로써 특정 기능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본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군 정비 분야 민간 아웃소싱 제도화와 관련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해당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중¹³⁾으로,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10

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민간 아웃소싱 제도화를 위한 법령체계 고도화 연구 (’25. 7. ~ 12./중앙대 산학협력단)’